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49
----------	-------

발의연월일 : 2025. 8. 13.

발 의 자 : 양부남 · 이상식 · 박선원
이성윤 · 김준혁 · 이광희
모경중 · 최혁진 · 박균택
채현일 · 조계원 · 전진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총기 제작 등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부가통신사업자가 인식하였더라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실상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총포와 화약류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자 국가에 대한 중대 위협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

가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다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록 취소 또는 정지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적인 정보 유통 자체를 원천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5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 ⑥ (생 략)	<u>금지하는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u> ② ~ ⑥ (현행과 같음)
--------------------	---